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김태선 · 이용우 · 윤후덕
허성무 · 이병진 · 윤종균
박 정 · 김주영 · 허 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

조익2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기숙사의 제공 등)”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로 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u>기숙사의 제공 등</u>)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u>기숙사</u>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u>주거시설의 제공 등</u>) ① ----- ----- <u>주거시설을</u> ----- ----- ----- -----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u>기숙사</u> 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u>주거시설을</u> ----- ----- ----- ----- -----. -----.
1. <u>기숙사</u> 의 구조와 설비	1. <u>주거시설</u> -----
2. <u>기숙사</u> 의 설치 장소	2. <u>주거시설</u> -----
3. <u>기숙사</u> 의 주거 환경	3. <u>주거시설</u> -----
4. <u>기숙사</u> 의 면적	4. <u>주거시설</u> -----
< <u>신 설</u> >	5. <u>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u>기숙사</u> 설치 및 운	6. <u>주거시설의 설치·운영, 그</u>

<u>영에 필요한 사항</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u>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u>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국가는 <u>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 개선사업</u>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u>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u>,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u>기숙사</u>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 ----- -----<u>주거시설</u>----- ----- ----- ----- ----- ----- ----- ----- ----- ----- -----
3. (생략) ② ~ ④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